

# 『輿地圖書』에 나타난 進上 관련 조항의 분석

전상욱

고려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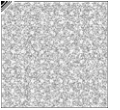
투고일자 : 2011. 06. 30 · 심사일자 : 2011. 07. 21 · 게재확정일자 : 2011. 08. 03

## 국문초록

『輿地圖書』는 18세기 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군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진상 관련 조항은 다른 진상 관련 자료가 진상물의 분정 상황이 도 단위까지만 파악된 것과 달리 도내 즉, 고을 단위까지 진상물이 파악되어 있어, 진상물의 전국적인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는 물품명·상납시기·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고을별로 기재양식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납시기와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부실하여 물품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약재류·어류·조개류·해조류·과실류·젓갈류·무기류·모피류·부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 도별로 정리하여 다른 진상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이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은 현물상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물의 현물상납 유지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지방에서 소비됨으로써 지방 상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 서론

『輿地圖書』는 18세기 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輿地圖書』는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고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輿地圖書』는 총 5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01</sup> 고을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정보가 분야별로 구분되어 40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02</sup>

『輿地圖書』에 관한 연구는 『輿地圖書』의 체제와 수록된 조항을 정리하거나<sup>03</sup> 편찬목적에 대해서 주목하였다.<sup>0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輿地圖書』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간행 사유에 대해서 주목하였을 뿐, 『輿地圖書』가 담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비록 최근에 『輿地圖書』의 각 조항 중에서 환곡·물산·전결·사찰 등 일부 조항이 분석되기도 하였지만<sup>05</sup> 이를 통해 『輿地圖書』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왕실에 봉진하는 진상물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진상 관련 조항에 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

은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을 들 수 있는데, 18세기 전국적인 진상물의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진상물의 마련방식, 도별 분포상황 등을 접근함에 있어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관련 조항이 분석되지 않은 것은 이를 분석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산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동법 실시 이후 극소수의 진상물만이 현물상납되었다는 인식<sup>06</sup>으로 인해 진상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sup>07</sup>도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이 분석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진상 관련 조항의 외형적인 모습과 이를 전산화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 관련 조항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진상 관련 자료와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輿地圖書』의 다른 조항을 분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01 『輿地圖書』는 제1책~제5책은 경기도, 제6책~제13책은 충청도, 제14책~제17책은 강원도, 제18책~제21책은 황해도, 제22책~제30책은 평안도, 제31책~제35책은 함경도, 제36책~제49책은 경상도, 제50책~제55책은 전라도로 결책되어 있다. 이 중에는 25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및 한 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개의 지지(地誌)가 수록되어 있다.

02 『輿地圖書』의 대표적인 조항은 강역(疆域)·방리(坊里)·도로(道路)·건치연혁(建置沿革)·형승(形勝)·성지(城池)·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능침(陵寢)·단묘(壇廟)·공해(公廩)·제언(堤堰)·창고(倉庫)·물산(物産)·교량(橋梁)·역원(驛院)·목장(牧場)·봉수(烽燧)·누정(樓亭)·사찰(寺刹)·고적(古蹟)·총묘(塚墓)·진보(鎭堡)·한전(旱田)·수전(水田)·진공(進貢)·방물(方物)·조적(糶糶)·전세(田稅)·대동(大同)·봉름(俵粟)·군병(軍兵) 등을 들 수 있다.

03 崔永禧, 『輿地圖書解說』,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영인본 『輿地圖書』; 李成茂, 1982, 『韓國의 官撰地理志』 『奎章閣』 6

04 梁普景,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裴祐晟, 1996,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85

05 변주승, 2006, 『『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韓國史學報』 25; 이상식, 2006, 『『輿地圖書』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5; 문용식, 2006, 『『輿地圖書』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韓國史學報』 25; 이철성, 2006, 『『輿地圖書』에 나타난 田結稅 조항의 텍스트적 이해』 『韓國史學報』 25; 서중태, 2006,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 연구』 『韓國史學報』 25; 김우철, 2006, 『『輿地圖書』 姓氏 조의 검토』 『韓國史學報』 25

06 이러한 인식은 '대동법 실시로 인해 지방에서 토산물을 현물로 상납하던 현물부과제로서의 공납제는 폐지되고, 조선전기 공납물(공물·진상)은 상품으로 전화되었다'는 德成外志子の 언급(德成外志子, 2001,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37)과 대부분의 착선진상은 공물주인을 통해 경중에서 마련되었고, 일부 진상물만 현물상납이 유지되었다는 이정철의 언급(이정철, 2001, 『대동법』, 역사비평사, pp.325~326)에서 보여진다.

07 조선시대 진상을 주목한 연구는 田川孝三, 1964, 『進上考』 『李朝貢納制의 研究』, 東洋文庫와 德成外志子, 2004,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進上制』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면에 불과하다.

## 『輿地圖書』에 나타난 진상관련 조항의 양식

『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을 들 수 있다. 각 고을별로 차이는 있지만 進貢 조항은 22제, 方物 조항은 그 다음인 23제 조항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고을에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이 수록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강화·교하·마전·부평·양성·양지·용인·음죽·진위·포천과 평안도의 영변·운산·순안·자산·귀성·선천·삼등 등의 고을에는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方物 조항은 충청감영·충청병영·평안감영·황해감영·경상감영·경상좌병영·경상우병영·경상좌수영 등 營誌에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에 수록된 물품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을 구분한 지역은 進貢 조항에 食材와 藥材를 수록하고, 方物 조항에는 무기류·부채류·일용소품 등을 수록하였지만, 進貢 조항만 수록된 지역에는 食

材와 藥材 뿐만 아니라 무기류·부채류·일용소품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의 양식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물품명만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충청도와 함경도는 물품명·봉진시기·수량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경기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평안도는 물품명만 수록된 고을과 물품명·봉진시기·수량 등이 수록된 고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각 조항별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경상감영의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 부분이고, <표 1>은 이를 EXCELL에 전산화한 것의 일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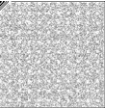
<표 1>과 같이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을 도명·고을명·봉진시기·물종명·수량·단위·비고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봉진시기·물종명·수량·비고는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에 수록된 내용이다.<sup>08</sup> 그러면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을 반영하는 봉진시기·물종명·수량·비고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봉진시기는 특정 물품이 봉진되는 시기를 입력한 셀(Cell)이다. 봉진시기는 월별, 정조·동지·탄일·납일과

표 1 경상감영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의 전산화

도명	고을명	봉진시기	물종명	수량	단위	비고
경상도	감영	1월	건대구어(乾大口漁)	35	미	
경상도	감영	1월	관목청어(貫目靑魚)	27	동음	
경상도	감영	1월	생치(生雉)	13	수	
경상도	감영	2월	건대구어(乾大口漁)	26	미	
경상도	감영	2월	건지황(乾地黃)	15	근	
경상도	감영	2월	고본(藁本)	2	근	
경상도	감영	2월	관중(貫衆)	4	근	
경상도	감영	2월	길경(桔梗)	1	근	
경상도	감영	2월	낭독(狼毒)	5	근	
경상도	감영	2월	녹용(鹿茸)	8	냥	
경상도	감영	2월	단건치(簞乾雉)	5	대	
경상도	감영	2월	맥문동(麥門冬)	8	수	별복정

08 EXCELL에 도명과 고을명을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의 활용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도명과 고을명을 각각의 셀(cell)로 설정하면, 진상물의 도별 분포상황과 고을별 분포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The figure shows two pages of handwritten Korean text from a historical document. The text is organized into columns and rows, with some larger characters acting as section headers. The top page has a header '方' and the bottom page has a header '進'. The entries consist of various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units or quantities, such as '大代斤小銀四', '大代斤小銀四', '大代斤小銀四', etc.

그림 1 경성감영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

같은 명절, 到界日, 별진상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봉진시기가 다양한 것은 진상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稅貢으로 상납하는 공물이 연 1회 봉진되는 것과 달리 진상은 다양한 명목으로 봉진되었다. 우선 절기에 맞는 물품을 진상하기 위해 삭선진상 또는 월령진상 명목으로 매월 봉진하였다. 그리고 명절에는 名日進上 명목으로 箋文과 함께 진상물을 봉진하였고, 관찰사가 부임하면 부임지의 특산물을 監司到界進上 명목으로 봉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봉진시기는 기재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봉진시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종명은 봉진하는 물품의 명칭을 입력한 셀(Cell)이다. 물종명은 모든 고을의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에 기재되어 있어,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의 자료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물종명의 표기방식이 고을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남칠을 ‘南漆-藍漆’, 모과를 ‘木瓜-木果’, 비자를 ‘櫃

子-悲子-匪子’, 학슬을 ‘鶴膝-鶴虱’, 궁궁을 ‘芎芎-芎藭’, 곡정초를 ‘穀正草-穀精草’ 등과 같이 하나의 물품을 동음인 한자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물품을 고을별로 다르게 기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大口魚古之醢-大口古之醢’, ‘大口魚卵醢-大口卵醢’, ‘生大口魚-生大口’는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표기방식이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품의 명칭을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상호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물종명은 가공방식에 따라 물품명이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어-반건문어-건문어’, ‘대구어-반건대구어-건대구어-동대구어’, ‘전복-반건전복-건전복-건숙복-단인건복-무염생복-소염생복-원복-장인복’ 등과 같이 수산물은 가공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밖에 물종명에 봉진명목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臘日에 犧牲으로 봉진되는 돼지·토끼·노루 등을 臘猪·臘兔·臘獐로, 청에 방물로 봉진하는 豹皮를 進獻豹皮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수량은 물품별로 봉진하는 수량 및 단위를 입력한 셀(Cell)로, 데이터 가공을 위해서는 수량과 단위를 각각의 셀(Cell)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수량의 표기 비율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수량을 이용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고는 하나의 셀(Cell)로 구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 ‘活雉 대신에 乾雉를 바치는 것’과 같은 代捧하는 물품, ‘충청도 부여에서 봉진하는 蹲梯는 도천사에서 마련’, ‘경기도 여주에서 봉진하는 납저는 방역청에서 出價買納하는 것’과 같은 특정 물품의 마련 방식을 입력하였다. 이외에 물품별로 수납하는各司 또는 各殿의 명칭, 특정 물품의 價米 등의 내용도 입력하였다.

지금까지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의 양식과 이를 EXCEL에 입력할 경우 구성되는 셀(Cell)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다음 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의 자료적 성격, 즉 어떠한 성격의 물품이 수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 조선후기 진상양상과 『輿地圖書』 진상 조항 관계

이 장에서는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인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의 자료적 성격을 물종명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물종명에 대한 기재 비율이 봉진시기와 수량 등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대부분 食材와 藥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藥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食材는 주로

어류·젓갈류·해조류·어란류 등 수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돛자리·부채류와 같은 일용소품과 무기류 등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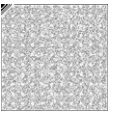
그러면 <표 2>를 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에 道別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별로 분류하는 것은 『輿地圖書』의 성격과 진상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輿地圖書』에는 경기도 9곳, 충청도 3곳, 전라도 16곳, 경상도 11곳 등 39 고을의 邑誌가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상 관련 조항이 도마다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은 각 도별 통계자료로서만 효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sup>09</sup> 그리고 道別로 정리한 것은 진상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 진상은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 지방문무장관이 管下

표 2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

분류	물종명
①약재류	갈근·갈화·감초·거핵·건삼·곡정초·과루인·궁궁·금은화·녹용·누로근·구기자·노봉방·당귀·등심초·만형자·맥문동·모향·모과·목적초·목통·방풍·백작약·백복령·백출·백편두·보골지·사삼·사향·산수유·산약·산조인·산질경·상기생·석탕곽·선각·숙지황·시호·연실·연화예·오가피·오미자·울눌제·우황·웅담·위령선·인진·인삼·지부자·총울자·택사·토사자·학술·홍화·황금·황기·회향 등
②어 류	가사리·건고등어·건광어·건대구어·건대하·건송어·건승어·건전어·과메기·사어·송어·석수어·송어·여항어·위어·애구어·연어·오징어·염문구어·접어·청어·황석어 등
③젓갈류	고등어젓갈·이리젓·생복식해·송어식해·위어식해·소라식해 등
④조개류	건축복·건홍합·생복·소라·전복·죽합·홍합 등
⑤어란류	대구알·송어알·송어알·연어알 등
⑥해조류	감태·미역귀·김·다시마 등
⑦가축류	돼지·양·말·사슴·노루·꿩·토끼·수달·천아 등
⑧모피류	사슴가죽·노루가죽·표피·초피·서피·수달가죽·양털·돼지털 등
⑨곡물류	대맥·소맥·신도미·신직미 등
⑩과실류	곶감·잣·생울·석류·유자·포도·호두·홍시·조홍시 등
⑪돛자리류	과룡화석·남화방석·남화석·별문석·변아침석·별연석 등
⑫무기류	각궁·갑주·조총·장검·단검·삼지창·요구창·화살·흑각궁 등
⑬부채류	백당선·백별선·백침선·유별선·유침별선·칠별선·칠침선 등
⑭유밀류	꿀·백정·석청 등
⑮지 류	백대지·백후지·백지·유대지 등
⑯소채류	곶채·신감채·죽순 등
⑰생활용품	나무빗·대빗·가위·풍월묵 등
⑱기 타	奴婢身貢·巫稅·役價·作紙價 등

09 이기봉, 2003, 『朝鮮時代 全國地理志 項目에 대한 檢討』 『문화역사지리』 15-3, p.10.





의 특산물을 왕실에 봉진하도록 의제되었다. 이처럼 진상물은 道 단위로 분정되었기 때문에 진상 관련 조항을 분석함에 있어 물품을 도별로 정리하였다.

이밖에 물품을 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것은 『輿地圖書』가 18세기 전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17세기 후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동법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조선후기 진상은 대동법 실시 이후부터 일부 진상물이 京中에서 마련하게 되는 등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으나 상당수 진상물의 현물상납이 유지되었다. 그런 대 대동법이 진상에 영향을 준 지점을 살펴 볼 수 있는 『湖西大同事目』, 『全南道大同事目』, 『嶺南大同事目』에는 특정한 진상물의 명칭을 제시하기 보다는 朔膳進上·內醫院藥材·方物 등 進上物目으로 제시되어 있다.<sup>11</sup> 그러므로 大同事目과의 상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進上物目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進上物目은 진상물의 특성과 봉진시기, 봉진사유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어 물선진상은 매월 봉진하는 삭선진상과 名日에 봉진하는 명일진상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에는 봉진시기와 봉진사유에 관한 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에, 물품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進上物目を 분류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물품을 다르게 기재하는 등 고을별로 진상 관련 조항의 기재양식이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다른 명목으로 수취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民魚는 식재로서 물선진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원에 상납하였다. 그러나 평안도에서는 民魚가 내의원에 상납하였다. 이는 民魚가 식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재 명목으로 수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각 고을의 진상물을 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었다.

가) 물품의 특성에 따라 食材는 물선진상, 약재는 약재진상, 무기류·모피류·일용소품 등은 방물진상, 祭需物은 제향진상으로 구분하였다.

나) 다만 제향진상과 물선진상은 주로 食材로 구성되어 물품명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제향진상은 물선진상과 구분되는 곡물류, 犧牲으로 사용되는 가축류, 薦新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포함하였다.

다) 수납처가 기재된 경우 수납처를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내의원이 수납처이면 약재진상, 봉상시가 수납처이면 제향진상으로 분류하였다.

라) 진상물로 보기 어려운 身貢이나 공물로 명시된 물품은 기타, 공물로 설정하였다.

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표 2>를 진상물목에 따라 분류하면 물선진상은 ②어류·③젓갈류·④조개류·⑤란류·⑥해조류·⑩과실류·⑭유밀류·⑯소채류, 약재진상은 ①약재류, 방물진상은 ⑧모피류·⑫무기류·⑰생활용품·⑮지류, 제향진상은 ⑦가축류·⑨곡물류로 구성할 수 있다. ⑩과 ⑯은 물품에 따라 공물과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하여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을 정리한 후, 18세기 전반 전국 단위의 진상물을 정리·수록되어 있는 『春官通考』와 상호 비교하여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성격에 대해 접근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진상 관련 자료는 『進上別單膳錄』과 『貢膳定例』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자료는 물선진상만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물진상이나 약재진상의 면모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春官通考』 卷58, 嘉禮條 에는 물선진상과 더불어 방물진상도 수록되어 있다. 게다가 『春官通考』에 수록된 진상물은

10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전결세 조항 중에 大同 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輿地圖書』 전결세 조항에 대해서는 이철성, 2006, 앞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11 『湖西大同事目』, 『全南道大同事目』, 『嶺南大同事目』에서 현물상납하는 진상물의 내역이 수록된 조항은 9조, 11조, 10조이다. 이들 조항에서 제시된 進上物目은 다음과 같다.

進上物目	
『湖西大同事目』 9條	本道仍定進上方物
『全南道大同事目』 11條	朔膳進上, 方物, 內醫院藥材靑大竹, 宗廟薦新物膳, 監司到界進上, 端午節扇, 內弓房油物, 工曹進上扇竹
『嶺南大同事目』 10條	監司到界進上, 三名日方物物膳, 端午物膳, 朔膳, 內醫院藥材靑大竹

표 3 『輿地圖書』, 『春官通考』, 『六典條例』의 진상물종수 비교<sup>12</sup>

	물선(여)	물선(춘)	약재(여)	약재(육)	방물(여)	방물(춘)	제향(여)	공물(여)	기타(여)	총수(여)
강원도	42	28	72	51	0	19	1	-	1	116
경기도	8	55	2	6	2	2	-	-	-	12
경상도	64	35	95	74	57	32	10	17	6	245
전라도	55	33	9	70	13	33	4	-	1	82
충청도	47	5	102	59	38	29	2	-	-	189
평안도	0	2	23	10	14	-	-	-	3	40
함경도	71	32	26	48	22	5	14	65	6	204
황해도	30	22	67	15	17	-	3	2	3	122

\* (여)는 『輿地圖書』, (춘)은 『春官通考』, (육)은 『六典條例』를 의미한다.

\* '-'는 관련 진상물이 없음을 의미한다.

경기관찰사가 봉진하는 진상물을 京營貢되었다거나, 황해도관찰사가 봉진하는 곡물류를 선혜청에서 봉진한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지방에서 현물상납하는 진상물 이외에 경중에서 마련하는 진상물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상호 비교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여겨진다. 다만 『春官通考』에도 약재진상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19세기 후반 자료이기는 하지만 『六典條例』卷5, 禮典 內醫院 各道進上에 수록되어 있는 약재진상 관련 부분을 참고하였다. 다음 <표 3>은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진상물과 『春官通考』와 『六典條例』에 수록된 진상물을 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한 표이다.

그러면 <표 3>을 참고하여 도별로 수록되어 있는 물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18세기 전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輿地圖書』는 17세기 후반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동법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

다. 그러나 대동법 운영 모습을 엿볼 수 있는 大同事目이 충청도·전라도·경상도 3개 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들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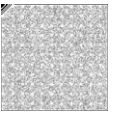
충청도는 대동법 실시 이후 삭선진상·약재진상 등 대부분의 진상물이 경중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돼지·유갑생복·생복·생복식해·황석수어·조홍시·생송이·소라식해 등 일부 진상물만이 현물상납이 유지되었다.<sup>13</sup>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春官通考』에는 宣惠廳物種折價라는 조항이 설정되어, 선혜청에서 各殿에 봉진하는 진상물을 價米로 환산한 折價가 수록되어 있다.<sup>14</sup>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충청도에 수록된 물선진상과 약재진상의 물품수가 타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약재진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수가 수록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러면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진상물을 경중에서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진상 관련 조항에 수

12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은 지방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만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六典條例』에 수록된 진상물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간행 시기가 100여년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록된 물종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반면에 『輿地圖書』에 수록된 진상물은 지방에서 현물상납하는 진상물만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중에서 마련하는 진상물과 지방에서 현물상납하는 진상물이 함께 수록된 『春官通考』의 진상물종수에 비해 그 수가 많다. 이는 『春官通考』에 수록된 진상물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물종인 반면에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종은各司에서 임의로 분정한 물종도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 『輿地圖書』에는 別卜定, 加定 등이 기재된 물종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18세기 각사에서 부족한 물품을 지방에 임의로 분정하기도 하였다고(미일, 1986, 「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 『韓國史論』 14).

13 『湖西大同事目』 60條  
 朔陽節產進上 及內局所納藥材等物 今皆自京卦進而 銀口魚海衣等物 移送湖南乙仍 于本道仍 定者 只是臘猪六口 有匣生鰻七百介 生鰻二缸 生鰻食醃五缸 黃石秀魚十斗 早紅梯一天三百介 生松栢三百三十本 小螺醃四缸 此則皆是本道所產之物 自監營分定於各其所產官 而其價則本廳回本道所報 既以大同米從優磨鍊 可以無弊卦進是白乎 餘 此外瓜滿遞代監司到界進上段置 今以大同米 依本道折定米一百九十石十斗零 當於瓜滿時題給

14 이에 의하면 호서청은 朔陽價米로 대전은 556석, 왕대비전은 513석, 혜경궁은 400석, 중궁전은 264석, 세자궁은 237석을 지급하였다(『春官通考』卷58, 嘉禮條 宣惠廳物種折價).



록된 물품이 타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물선진상은 봉진시기에 따라 매월 봉진하는 朔膳進上和 정조·동지·탄일에 봉진하는 名日物膳, 관찰사가 임지에 도착하였을 때 봉진하는 到界進上,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봉진하는 別陳賀進上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경중에서 마련하는 물선진상은 주로 삭선진상과 명일물선으로 나머지 도계진상과 별진하진상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현물상납이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선진상이 삭선진상인지 아니면 명일물선, 도계진상, 별진하진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봉진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충청도는 타도에 비해 봉진시기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여 물선진상의 경우 전체 229사례에서 213사례의 봉진시기가 표기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별진하 63사례, 도계 91사례로 총 154사례가 도계진상과 별진하진상 명목으로 봉진되었다. 나머지 사례는 생복, 생복식해, 생송이, 소라식해 등 대동법 이후에도 현물상납이 유지된 삭선진상과 물선진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청도에 수록된 물선진상 중에서 대부분이 삭선진상과 명일진상 명목이 아닌 도계진상과 별진하진상으로 봉진되는 진상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약재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湖西大同事目』에는 약재진상을 경중에서 마련하도록 규정되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물상납을 통해 봉진되는 물품에 비해 품질면에서 조악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왕실의료와 직결되어 있는 약재진상은 다른 물선진상이나 방물진상에 비해 품질에 있어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효종 8년(1657)에 충청도 약재진상을 경중에서 마련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현물상납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sup>16</sup> 결국 충청도의 약재진상은 『輿地圖書』가 간행된 18세기에는 현물상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표 3>에서와 같이 상당수의 약재가 수록될 수 있었다.

전라도도 대동법 실시 이후 일부 진상물을 경중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라도는 삼명일에 봉진하는 말·갑주·마장, 종묘에 천신하는 켈채와 천아, 내의원 의황·웅담·사향은 경중에서 마련하게 되었고<sup>17</sup> 이러한 진상물은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라도는 상당수의 진상물이 현물상납되었음<sup>18</sup>에도 불구하고, 『輿地圖書』전라도 편에 수록된 진상물은 타도에 비해 상당히 적다. 특히 약재진상과 방물진상은 전라도와 유사하게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진상물의 현물상납이 유지된 경상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수록된 방물진상의 수가 적은 것은 대동법 실시 이후 도내에서 방물진상을 마련하는 방식이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다. 방물진상은 정조·동지·탄일에 봉진하는 삼명일방물과 단오방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삼명일방물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각 고을에서 제작하는 방식을 각영에서 전담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sup>19</sup> 그러나 『輿地圖書』전라도편에는 전라감영이 보유편에 수록되어 있고, 전라우수영, 전라좌수영, 전라병영은 營誌 자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수록된 방물진상의 수가 경상도에 비해 적은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15 『湖西大同事目』 60條

16 『承政院日記』 147책, 효종 8년 12월 21일

九月二十日大臣 備局堂上引見時 戶曹判書鄭維城所啓 湖西大同作米中 至於藥材 則不可不以本色上納 受防納人等 自京轉貿 非但其品不好 各色藥干等 仍廢採藥 將不知藥名 細種可慮 故前日從中 有速爲變通之教 今日大臣入侍時 停當 何如 右議政李厚源曰 今年秋採 已備將納 明年春採爲始 使之本色上納 何如 上曰 依爲之

17 『全南道大同事目』 10條

二十八司元貢物及田稅條貢物 ……(중략)…… 三名日進上甲靑馬及馬裝作紙, 訓練都監眞絲魚膠, 人壽宮物膳, 宗廟薦新蔬菜, 內醫院牛黃熊膽麝香, 迎接都監京婢房子價, 皆以米磨練, 自本廳上下, 一年應下之數, 統計五萬六千八百八十九石是白齋

18 이는 상납미와 유치미에 포함된 진상물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상납미에 포함된 진상물은 우황·웅담·사향·말·마장 등과 같이 특정한 명칭을 열거하였다(『全南道大同事目』 10條). 반면에 유치미에 포함된 진상물은 삭선진상, 방물, 내의원약재 등과 같이 진상물목을 열거하고 있다(『全南道大同事目』 11條). 실제 대동법 실시 이전의 읍지가 남아 있는 순천부는 41종의 진상물 중에서 3종(마장사장부유둔, 인수궁에 납부하는 은구어식해, 천아)만이 상납미에 포함되었을 뿐이다.

19 『全南道大同事目』 49條

三名日方物價段, 各官以大同米布, 依詳定輸納各營爲白齋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각 고을에서 제작하였던 단오방물은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 단오방물은 端午節扇進上이라는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물품구성에 있어 부채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라도에 수록된 13종의 단오방물 중에서 8종이 부채류였고 이러한 부채류는 삼명일방물이 1~2 고을에만 수록된 것과 달리 장수·광주·나주·광양·함열 등 25 고을에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는 <표 3>에서 보듯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輿地圖書』 경상도편이 전라도편과 달리 경상감영·경상우병영·경상좌병영·경상좌수영·통영 등 營誌가 충실히 수록되어 있는 것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邑誌가 수록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경상도는 <표 3>에서 보듯이 진상물 이외에 일부 공물도 현물상납되었다. 이러한 물품으로 『嶺南大同事目』에서 상의원의 자연석·세여석·돛자리, 공조의 자연석, 장흥고의 돛자리, 선공감의 뇌록, 의영고의 세모·곽이, 봉상시의 오해조, 군기시의 여석, 해민서와 활인서의 오수유<sup>20</sup>가 제시되어 있다.<sup>21</sup> 특히 중국에 세폐방물로 바치던 돛자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풍기·의성·안동·예천·순흥·영천·용궁 등 경상도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돛자리를 제조하여 상의원과 장흥고에 상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저치미를 지급받기도 하였다.<sup>22</sup>

이처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예에서 보듯이,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에는 대동법 실시 이후 현물상납이 유지된 진상물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면 충청도·전라도·경상도와 달리 大同事目이 남아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경기도는 타도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진상물을 봉진하였다. 이는 경기도에 삭선진상·명일물선 등 상례적인 진상 이외에 매일 봉진하는 小日次進上和 3~7일에 한 번씩 봉진하는 大日次進上 등 일차진상이 부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23</sup> 이처럼 경기도는 진상물을 가장 빈번하게 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보듯이 타도보다 훨씬 적은 12종의 물품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각 고을에서 진상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대신에 價米를 징수하여 경기감영에서 전담하여 경중에서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春官通考』에 수록된 경기도의 물선진상이 京營貢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이들 물선진상이 『萬機要覽』 財用編1 各貢條 중의 京營에 수록된 물품명과 일치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는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에는 방물진상이 1종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春官通考』에는 24종의 방물진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대동법 실시 이후 강원도의 방물진상은 관동방물계가 전담하여 봉진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경기도와 강원도의 대동법 실시 초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事目이 남아 있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대동법으로 인한 영향인가는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경중에서 진상물과 공물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貢人이 대동법 실시 초기에 모집되는 점을 고려<sup>24</sup>하면 이러한 변화가 17세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嶺南大同事目』 7條

二十五回元貢物中 田稅條貢物中 尙衣院紫硯石細礪石各種席子 工曹紫硯石 長興庫各種席子 繕工監磊綠 義盈庫細毛蠶耳 奉常寺吳海藻 軍器寺礪石 兩醫司吳茱萸 則本色上納

21 이러한 물품이 수록된 고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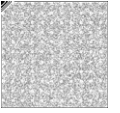
물품명	고을명	물품명	고을명
연석	연일	곽이	사천, 연일, 웅천, 남해
여석	단양	각종석자	풍기, 의성, 안동, 예천, 순흥, 영천, 용궁
뇌록	장기	오수유	감영
세모	사천		

22 『嶺南聽事例』 外方會減條

豊基等八邑(豊基 禮泉 順興 龍宮 榮州 永川 安東 義城) 以席産 毎年繕造各色席子 備尙衣院及長興庫 春等席子及雜物價 並以儲置會減 秋等席子價 以戶曹婢貢木會減 而封裏駟價 與作紙役價 則以儲置會減

23 田川孝三, 1960, 앞의 책, pp.112~114.

24 한우근, 1965, 「李朝後期貢人의 身分」 『學術院論文集』 5



함경도는 상정법 실시 이후에도 진상물 이외에 상당수 공물을 현물상납하는 소위 ‘土貢直納制’를 실시하였다.<sup>25</sup> 물론 경상도와 황해도 역시 일부 공물이 현물상납되었으나, 함경도는 <표 3>에서 경상도와 황해도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많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함경도의 진상 관련 조항의 양식이 타도와 큰 차이가 있다. 타도는 進貢 조항이나 方物 조항으로 설정하여, 진상물과 공물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경도는 흥원·길주·문천·중성·영흥·명천·함흥·북병영은 進貢 조항을 진상물과 공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상정법 실시 이후 타도는 貢價의 수납처가 선혜청·호조와 같이 일원화된 것과 달리 함경도는 상정법 실시 초기 貢價 수납처가 해당各司였다. 이로 인해 물품별로 五升布와 四升布로 환산된 貢價와 이를 수납하는各司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는 대동법 실시로 인한 영향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대동법 실시 이후 경중에서 마련하는 진상물이 누락되어 있고, 현물상납이 유지된 진상물과 일부 공물은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이후 현물상납이 유지된 진상물 중에서 일부는 상업발달로 인해 京中이나 각영에서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sup>26</sup> 예를 들어 평안도의 방물진상은 황해도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권감되었다가 숙종 19년(1693)에 복구되면서<sup>27</sup> 갑주와 모피류는 현물 대신에 價米를 상평청에 상납하면, 상평청에서 이를 통해 경중에서 마련하게 되었다.<sup>28</sup> 이로 인해 평안감영에

수록된 철평투구·철갑·녹피는 代木(價米로 상납함을 의미), 궁대통개·소성·인도·가위·조총·황모는 本色(현물상납을 의미)으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도의 약재진상 중에서 청대죽을 제외한 약재는 영조 5년(1729)에 전주에서 전담하여 마련하게 되었다.<sup>29</sup> 이로 인해 전라도의 약재진상은 <표 3>에서 보듯이 타도에 비해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1~2고을에만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각 고을에서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던 청대죽은 광주·장성·영암·함평·능주 등 22 고을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는 대동법의 영향과 대동법 실시 이후 상업발달로 인한 마련방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대동법 실시 이후 함경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물을 경중에서 마련하는 사실에서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는 진상물이 주로 수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輿地圖書』에 나타난 진상의 사회경제적 의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輿地圖書』진상 관련 조항에는 공물도 일부 수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8세기 전반에 공물의 현물상납은 대부분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진상물은 현

25 김옥근, 1988, 『朝鮮後期財政史研究』 3, 일조각, pp.285~286.

26 오미일, 1987,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慶契창설운동과 亂慶活動」 『奎章閣』 14

27 『承政院日記』 351책, 숙종 19년 1월 3일

禮曹判書柳命賢所啓 三名日 各道監兵營 例有方物進之規 此出於臣子享上之儀 事體重大 而兩西監兵營 自丙丁亂後 權減方物 今至六十年 而尚未復舊 即今兩西物力 實有加於三南 公私酬應 無不舉行 而獨於享上之典 尙此廢閣 其在藩臣之道 非但南盡缺然 揆以事體 亦甚未安 臣以此事 議於朝堂 皆以爲不可不復舊 而久廢之餘 臣曹不敢直講舉行 下詢於諸大臣而處之 何如 領議政權大運曰 臣子享上之儀 兩西久廢不行 果爲未安 似當有復舊之舉矣 左議政陸來善曰 兩西物力蘇完 久廢享上之議 其在事體 誠極未安 不可不復舊矣 上曰 自今年誕日爲始 並令舉行 而方物物種 自該書考出前例 參酌裁定 別單啓下 宜矣

28 『承政院日記』 351책, 숙종 19년 2월 5일

禮曹啓曰 兩西監兵使所封 三名日 方物物種入事草記 傳曰 知道 依付標舉行可也事 命下矣 依聖教付標段 分付各該曹 而方物中 甲冑及皮物等物 一依榻前定奪 自常平倉句 管掛進 其價本 各其本營 直送該廳之意 分付各道 而頃於冬至方物進之時 弓袋筒箇見樣 自內弓房 下送各道 今此兩西 亦依此例 弓袋筒箇見樣 令內弓房下送事 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29 『湖南廳事例』 儲置會減條 內醫院草藥材

當初藥材價米 不道四百五十餘石 而康熙辛巳 自內局加定藥材價米合爲七百九十七石零矣 其後或減或加 藥材價爲八百七十七石六升六合二夕 刷馬價四十一石(當初則分定各邑 以收租盡給 雍正己酉全州都廳)

『湖南廳事例』 儲置會減條 靑大竹價米

每朔每邑靑大竹二十五箇 封進於內局 而每箇價米八斗四升式 作紙木五匹 每匹價米八斗式 合米十六石十斗 每年以十二邑排班輪運 若值閏年 加官一邑

물상납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공물과 진상물은 지방에서 토산물을 바친다는 점에서 유사할 뿐 아니라 물품구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sup>3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의 현물상납을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에 대부분 진상물이 수록된 것은 공물과 진상물의 봉진명목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었다. 진상물은 稅貢 명목으로 봉진하는 공물과 달리 왕실에 禮物명목으로 봉진하는 물품이었다. 이로 인해 진상물의 경감이나 다른 물품으로의 봉진 등은 왕의 恩恤로만 가능하였고, 신하들도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왕의 위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지방문무장관이 왕실에 진상물을 봉진하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였기 때문에<sup>31</sup> 진상물의 현물상납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면 진상물의 현물상납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진상물의 현물상납으로 1820년에 전라도에서 진상물 마련을 위해 매년 8500여석이 소비되는 점에서 보듯이<sup>32</sup> 각 도에는 진상물 마련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소비되었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고을에서 직접 진상물을 마련하지 않고, 각營 주변 상인들로부터 진상물을 구입하여 각영에 봉진하는 소위 ‘營作貢’이 발생

하고 있었다.<sup>33</sup> 이로 인해 진상물 마련을 위한 비용이 各營 주변 장시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되었고, 진상물을 봉진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이윤이 발생함을 인식한 상인들이 물품을 독점 판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함경도에서 봉진하는 녹용은 감영 주변 상인들이 녹용을 독점하여 각 고을의 색리들이 이들에게서 구입하지 않으면 감영에 납부조차 할 수 없었다. 하물며 녹용이 생산되는 六鎭의 고을에서도 상인들에게 녹용을 구입하여 납부하기까지 하였다.<sup>34</sup>

이처럼 진상물을 현물상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상업적 이윤이 발생함에 따라 한양의 상인들은 세력가와 결탁하여 진상물을 경중에서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sup>35</sup> 예를 들어 전라도의 營邸吏가 朔膳進上을 전담하여 봉진하는데, 이를 한양의 상인들이 대신 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營邸吏의 권리를 보호함에 따라 이후에도 營邸吏에 의해 진상물이 마련되어 현물로 상납될 수 있었고<sup>36</sup> 이로 인해 각도의 진상물 마련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방에서 소비될 수 있었다.

요컨대, 각도에서 진상물을 현물상납함에 따라 여기서 파생되는 상업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상인들의 출현과 각영 주변 장시에서의 물품의 활발한 유통은 지방 상업 발달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30 田川孝三, 1960, 앞의 책, p.218.

31 『光海君日記』 권38, 광해군 3년 2월 11일  
傳曰 外方進上 乃藩臣享上禮也 昔楚子包茅不貢 意齊桓桓擊罪致討 非貴其物 以義爲重也 濟州各邑薦新之果 尙不封進 則諸殿進上 尙何足云哉 藩臣不敬之罪 不可不懲 所當拿問 今姑貸待之 濟州官吏 竝各別推考 以警其慢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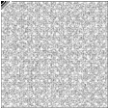
32 1820년 간행된 『湖南貢膳定例新編』에는 호남에서 봉진하는 진상물과 그 수량, 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호남에서 진상물을 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진상물 마련을 위해 호남청에서 약 1713석, 군역청에서 2313석, 각 고을에서 4627석을 부담하였다(『湖南貢膳定例新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 古朝51-다210)).

33 김동철, 1993, 『朝鮮後期 貢人研究』, 한국연구원, pp.219~225.

34 『正祖實錄』 권30, 정조 14년 4월 30일  
進上鹿茸之翔貴 年年漸加 數年前端川進上 有一對四兩重者 其時道臣盡退他邑之茸 皆令四兩爲準 列邑大窶 艱辛貿納 鹿茸之不計價 實自其時 而商賈之私自貢買 極不過七八十兩 朝家之添給百兩 可謂過費之過價 各邑所納 一經還退 更求他品 只要順納 如是之際 價何可論 每當月令 列邑色吏各持價本 齊會營底 非都賈之所賣 不能納 雖六鎭產茸之邑 必買取於咸興而納之 此皆營主人都賈輩 潛相符同 百般掣切

35 오미일, 1987, 앞의 논문

36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5월 22일  
湖南營邸之備納朔膳物膳 亦一元貢也 厚價貢買 世世傳守 何異於京貢人乎 每歲春謁之行 駐巽市街 詢摸於京貢人 以爲例 大抵朝家之視之京與鄉 一也 既思之 不可無一番明示之舉 年前無賴輩之妄意窺覷於湖南邸貢 敢生京作貢之計者 常所駭痛 此後更或有如此之類 無論上言與呈訴 狀頭令廟堂 移付法司 嚴刑島配 勿揀赦典 仍令湖南道伯 曉諭於鄉貢各人等處 俾得安意樂業



## 결론

『輿地圖書』는 18세기 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군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진상 관련 조항은 다른 진상 관련 자료가 진상물의 분정 상황도 단위까지만 파악된 것과 달리 도내 즉, 고을 단위까지 진상물이 파악되어 있어, 진상물의 전국적인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進貢 조항과 方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는 물품명·상납시기·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고을별로 기재 양식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물품명 이외의 정보는 소략하다.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약재류·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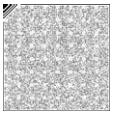
조개류·해조류·과실류·젓갈류·무기류·모피류·부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 도별로 정리하여 다른 진상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이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은 현물상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물의 현물상납 유지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지방에서 소비됨으로써 지방 상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본 글은 『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진상 관련 조항이 설정된 이유 즉,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 주목하였을 뿐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진상물의 분정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못하였다. 추후 『輿地圖書』에 누락된 고을의 邑誌를 보완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輿地圖書』
- 『貢膳定例』
- 『湖西大同事目』
- 『嶺南大同事目』
- 『嶺南廳事例』
- 『春官通考』
- 『萬機要覽』
- 『全南道大同事目』
- 『湖南廳事例』
- 『湖南貢膳定例新編』
  
-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 한우근, 1965, 『李朝後期貢人の 身分』 『學術院論文集』 5권
- 李成茂, 1982, 『韓國의 官撰地理志』 『奎章閣』 6권
- 김옥근, 1984, 『朝鮮王朝財政史研究』 1권, 일조각
- 오미일, 1986, 『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 『韓國史論』 14권
- 오미일, 1987,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塵契창설운동과 亂塵活動』 『奎章閣』 14권
- 梁普景,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옥근, 1988, 『朝鮮王朝財政史研究』 3권, 일조각
- 裴祐晟, 1996,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85권
- 송수환, 2000,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集文堂
- 德成外志子, 2001,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봉, 2003, 『朝鮮時代 全國地理志 項目에 대한 檢討』 『문화역사지리』 15-3
- 김우철, 2006, 『『輿地圖書』 '姓氏' 조의 검토』 『韓國史學報』 25권
- 문용식, 2006, 『『輿地圖書』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韓國史學報』 25권
- 변주승, 2006, 『『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韓國史學報』 25권
- 서종태, 2006,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 연구』 『韓國史學報』 25권
- 이상식, 2006, 『『輿地圖書』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5권
- 이철성, 2006, 『『輿地圖書』에 나타난 田結稅 조항의 텍스트적 이해』 『韓國史學報』 25권
- 이정철, 2010, 『대동법』, 역사비평사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3, September 2011, pp.150~163  
Copyright ©20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A study of Jinging(進貢) Bangmul(方物) Provisions in Yoji Doseo(輿地圖書)

Jeon, Sang Wu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Received : 2011. 06. 30 · Revised : 2011. 07. 21 · Accepted : 2011. 08. 03

### ABSTRACT

In Ryeojidoseo(輿地圖書) Jinging(進貢) Bangmul(方物) item, The Goods name, date, How to make, quantity, etc. are recorded.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wns by the way it is written. at Goods in Jinging(進貢) Bangmul(方物) item, contained medicines, fish and shellfish, provisions, fruit, salted seaweed, weaponry, Leather, buchaeryu are included. And these goods are the town were offering some of the tribute(貢物) and the donation to the palace(進上物) in the mid 18th century.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daedongbeop(大同法).

If this analysis approach to the provinces, This analysis makes clear, for example, in Gyeonggido(京畿道) only 12 species recorded and in Chungcheongdo(忠清道) no a monthly-Jinsang(朔膳進上), in Chollado(全羅道) Sammyeongilbangmul(三名日方物) is not recorded but Bamboo and liabilities are recorded, no bangmul-Jinsang(方物進上) in Gangwondo(江原道), etc. This shows the nature of the Jinging(進貢) Bangmul(方物) item

**Key Words** \_Ryeojidoseo(輿地圖書), Jingsong(進貢), The Tribute(貢物), The Donation to the Palace(進上物), Daedongbeop(大同法)